

석유개발관련 이중과세방지제도

글·이철규 | 대한석유협회 석유개발팀 부장

1990년을 고비로 석탄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내 자원개발사업은 자원의 고갈과 생산원가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현재 가행되고 있는 금속광산은 수 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석탄산업마저 1990년대 중반이후 석탄사업합리화사업에 따라 정리되면서 생산량이 전성기의 10%정도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자원산업의 몰락과 더불어 그 수요가 사라진 세제상의 지원제도들도 하나 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현재 남아있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세제는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자원개발사업의 일종인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세제 역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남아 있는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세제는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된 세제뿐이다. 그나마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그 존속여부에 촉각을 집중해야 하는 실정이다. 21세기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2010년대 자주개발 원유 도입률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지원세제도 대폭 확대하여야 하겠다.

세계 석유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석유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하여 생산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매장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감모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금은 슈퍼 메이저로 성장한 프랑스의 TotalFinaElf, 이탈리아의 ENI, 영국의 BP 등도 국영석유회사로 설립되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 민영화되기까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왔다. 우리와 여건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해외탐광준비금제도, 해외신광상탐사비 특별공제제도(감모공제제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등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세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세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2003년말 종료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협회는 지난 4월 일몰이 없는 항시법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많은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건의하였다. 다행히 정부에서 우리 협회의 건의를 일부 반영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갈망하는 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 석유개발사업 현황 및 필요성

가. 해외석유개발사업 현황

해외석유개발사업은 1981년 코데코에너지(주)가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에 처음 진출하였고, 1983년 정부에서도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공불용자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 말까지 우리 기업들은 총 37개국 109개 사업에 참여하여 이중 58개 사업은 사업성 결여로 철수하거나 매각하였고, 생산사업 21개, 개발사업 10개 및 탐사사업 20개 등 총 5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규모는 정부 융자지원금 8억 6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39.6억 달러이고 이중 32.2억 달러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1%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가채매장량은 592백만 배럴과 108백만 톤이며, 2002년 한 해 동안 21백만 배럴을 배당받아 원유의 자주개발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석유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관련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해외석유개발사업은 급격히 침체되었다. 정부는 2001년 초 융자비율을 10% 상향조정하고 성공사업에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인식부족과 투자여력의 부족, 그리고 투자우선순위 하향조정 등으로 분위기는 반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지탱할 기반자체마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02년까지 5년 동안 신규 진출 사업이 22개 사업에 불과했던 반면 철수하거나 매각한 사업이 26개 사업에 달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민간기업에 종사하던 석유개발 기술 인력은 100명 정도였으나 현재 30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나. 석유개발사업의 필요성

원유수요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수입량은 2차 석유파동 당시 하루 50만 배럴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말 현재 하루 211만 배럴, 연간 7억 9천만 배럴로 4배 이상 증가되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석유수입국이 되었으며, 소비량도 209만 배럴/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6번째 소비국으로 부상하였다. 국민총생산(GDP)대비 원유수입비중도 1999년 3.7%에서 2000년에는 5.5%로 급증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1974년의 6.1%에 근접한 수준으로 에너지 위기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정부가 2010년 1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원유의 자주개발도입율도 2002년 말 현재 2.7%에 불과하여,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입국가인 일본의 11.3%나 프랑스가 7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석유위기를 대비하는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석유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겠다.

더욱이 해외개발을 통한 원유도입이 원유의 직수입보다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개발 원유도입단가는 평균 배럴당 11.1달러수준으로서 2000년도 원유도입단가 27.04달러, 2002년도 23.36달러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석유개발사업은 국가적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또한,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이와 관련된 건설 및 설비산업의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산유국과의 자원외교의 장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다.

2. 석유개발관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석유개발관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현황

내국법인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로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시 생산물분배계약 등의 주체로서 자원보유국 정부에 직접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 법인세를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둘째는 생산물분배계약 등에 의거 자원보유국이 소득세를 생산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생산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법인이 지분 참여함으로써 현지법인으로부터 세후 소득을 배당받는 경우(예 : 예멘의 마리브광구) 동 배당에 대해 자원보유국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받는 분에 한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물분배계약 등에 의거 자원보유국이 세금을 포함하여 자원보유국의 몫을 가져가고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생산물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경우, 자원보유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때에만 소득세를 면제받을 분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셋째는 현지자회사를 설립하여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우리나라가 자원보유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외국자회사의 지분 20%이상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외국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면서 200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한시법으로 개정되었다. 2004년부터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기존 참여사업에 대한 이중과세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지 약화가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2002년 12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규정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덴마크, 브라질, 일본, 이스라엘 등 6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석유자원보유국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경우에도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의 적용으로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5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외국자회사의 범위도 출자총액의 50%이상으로 강화되어 있어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많은 지분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개정의 필요성

해외석유개발사업은 1983년부터 정부가 성공불응자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1995년 이전은 석유사업기금) 예산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설정된 2010년 자주개발원유 10%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금년말로 예정된 동해-1 가스전의 생산개시를 비롯하여 베트남 유전의 성공이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도화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유업계를 포함한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을 육성하여야 기술인력의 수준이 원활해지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고 한정된 정부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들을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특자금의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적절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석유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자원보유국과의 계약형태에 따라 세금납부 방법에는 상이한 점이 있으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내로 과실송금된 배당수입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방지라는 세법상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모기업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지법인 또는 제3국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와 해외투자준비금제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면서 동 제도들이 삭제되고 현재 남아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뿐이기 때문에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법은 존속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취지의 외국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69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 포함)뿐만 아니라, 탐사비특별공제제도(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58조의 2와 3 : 감모공제제도), 석유자원공급안정화 투자촉진세제(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5 : 해외생산유전의 광업권 취득시 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4. 협회 개정안 및 재정경제부 개정방향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우리 협회는 현행 200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한시법을 항시법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대부분의 조항이 한시법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결국 3년 뒤 또 다시 금년과 같이 동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제도인 동 제도는 항시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표1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 협회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자 회사를 설립하였거나 또는 외국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자원보유국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그 참여지분과 관계없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5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참여 지분을 일반적인 투자사업은 25%이상으로 낮추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의 총출자 합계액이 5% 이상인 경우 그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여러 국내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콘소시엄 전체 지분이 5% 이상인 경우 콘소시엄에 참여한 모든 국내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 맺음말

금번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될 경우 무엇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자원개발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저렴한 해외자원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원정책이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게만 적용되는 세법이 개정된다

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21세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이 석유전쟁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동사태가 심각하게 전쟁일로로 치닫고 있을 즈음,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중동에서의 석유이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물밑외교를 펼쳤었다. 지금도 러시아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과 외교전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전 물과 같이 소중한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기업들의 이중과세의 부담이 다소 감소됨으로써 사업의 수익성이 증가되고 투자의욕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자원보유국이든 자국의 자원을 개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다만 세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생산물로 대체하고 세금을 면제하는 등 그 나라의 법제나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이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마리브광구와 라스라판 가스전과 같은 광구는 이중과세를 면하게 되었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사업에 까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아직은 모든 사업이 이중과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되어 모든 석유개발사업이 이중과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들도 국내세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바탕아래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생산물분배계약 등에 명시된 자원보유국의 조세제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스스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에 따른 소득의 발생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조항에 의거 이중과세를 받

지 않을 것인지 반드시 검토하여야만 사업의 수익성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자원보유국의 법규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함으로써 모회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등 참여할 수 있는 사

업의 폭이 넓어지고 가능성이 증가됨으로써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안정적인 석유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고 원유도입선 다변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중동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다. ㉞

〈표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안

현 행	협 회 개 정 안	재경부 개정방향
<p>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외국 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③ <신 설></p>	<p>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외국 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 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외국 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p> <p>*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25% 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의 총 출자 합계액이 5% 이상인 경우 그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함.</p>